

엠펙스 확산세 주춤... 고위험군 관리 필요

국내 102명, 93% 국내감염 추정...최근 정체세 1차 백신 접종 총 3438명...예방효과 10배까지 전문가 "접종 규모 작아...고위험군 기준 마련"

국내 엠펙스(MPOX·원숭이두창) 유행이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중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엠펙스 백신 접종이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고위험군 대상 범위를 마련해 백신 접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월 5주차(5월 30일~6월 4일) 확진자는 10명으로 누적 환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100명, 여성은 2명이며 내국인은 93명, 외국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엠펙스 환자 수는 지난해 6월 22일 첫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일 년 만에 100명을 돌파했다. 엠펙스는 올해 4월부터 지역사회로 다시 전파되기 시작해 4월 7일 이후 확진된 환자만

97명에 달한다.

주간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4월 2주차 7명→4월 3주차 15명→4월 4주 16명→5월 1주 16명→5월 2주 15명→5월 3주 6명→5월 4주 11명→5월 5주 10명으로 소규모 등락을 반복하는 정체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엠펙스 확진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102명 확진자 중 국내감염은 95명(93.13%)이며 해외 유입은 7명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젊은 남성 성소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엠펙스 감염 노출 전 백신(진네오스)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접종기관 130개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는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누적 백신 접종자는 3438명이다.

당국은 백신 예방효과를 강조하면서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접종을 독

려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엠펙스 백신 미접종자의 엠펙스 발생률은 백신 2회 접종자와 1회 접종자보다 각각 10배, 7배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사전 접종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나 (엠펙스에) 노출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접종의 규모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접종 자체가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종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누적 예방 접종자 규모와 관련 "작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엠펙스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위험군에 대해 노출 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4일 이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행이 일어 가능성은 낮더라도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위험군 기준을 정하고 규모도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엠펙스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HIV 감염환자들이 알음알음 보건소에 연락해 (접종) 링크를 받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다"며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백신 맞을 기회를 찾아서 예방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접종 대상이 몇 명인지 추산하고 모델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0대 남자 중 6개월 이내 HIV나 성매매 감염 질환 감염자 등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7월 엠펙스에 대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국내 발생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경보 하향 시점과 관련해 정 교수는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 시도 "전체적인 의학적 위험도를 코로나19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위기경보 하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여수경찰, '청소년 보호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식 개최

여수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 온 유공자 및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진도경찰,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도경찰서는 최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경찰, 아동학대·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운영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읍 일원에서 전북과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 아동학대 및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동부소방,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광주동부소방서는 최근 조선태고교 해오름관에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강진소방, 승강기 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강진소방서는 최근 강진군 강진을 소재 이안가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승강기 사고 대비 인명구조 현직 적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해경, 제68회 현충일 충혼탑 참배로 호국영령 닦기

완도해경경찰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완도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배달 노동자도 7월부터 산재 적용... '전속성' 15년 만에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안 내달 시행...92만5000명 추가 혜택 그간 한곳서만 일해야 적용됐으나...여러 업체도 가능

오는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이 같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현행 산재보험법을 보면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택시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



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나무그늘 아래서 피하는 더위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자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 23일께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망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른 거절 결정을 내렸다.

1심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그 증상이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선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후 "망인은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선욱 기자